

## 전자어음 거래약관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(안)	비 고
<p>제1조 ~ 제2조 (생 략)</p> <p>제3조 (용어의정의) 1. ~ 5 (생 략) 6. '공인전자서명'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. 7. ~ 8. (생 략)</p> <p>제4조 ~ 제5조 (생 략)</p> <p>제6조 (공인전자서명) ① 전자어음의 발행, 배서, 보증 등에 사용하는 서명은 이용자 본인의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여야한다. ② (생 략)</p> <p>제7조 ~ 제18조 (생 략)</p> <p>제19조 (전자어음발행) ① 1. ~ 10. (생 략) 11. 발행인 공인전자서명 ② ~ ⑥ (생 략)</p> <p>제20조 ~ 제22조 (생 략)</p>	<p>제1조 ~ 제2조 (좌 동)</p> <p>제3조 (용어의정의) 1. ~ 5 (좌 동) 6. 전자서명'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. 7. ~ 8. (좌 동)</p> <p>제4조 ~ 제5조 (좌 동)</p> <p>제6조 (전자서명) ① 전자어음의 발행, 배서, 보증 등에 사용하는 서명은 이용자 본인의 전자서명을 사용하여야한다. ② (좌 동)</p> <p>제7조 ~ 제18조 (좌 동)</p> <p>제19조 (전자어음발행) ① 1. ~ 10. (좌 동) 11. 발행인 전자서명 ② ~ ⑥ (좌 동)</p> <p>제20조 ~ 제22조 (좌 동)</p>	<p>- 전자서명법 개정 (2020.12.10시행)</p> <p>- 전자서명법 개정 (2020.12.10시행)</p> <p>- 전자서명법 개정 (2020.12.10시행)</p>

<p><b>제23조 (전자어음 배서)</b>  ① 1. ~ 6. (생 략)  7.배서인 <u>공인전자서명</u></p> <p><b>제24조 (생 략)</b></p> <p><b>제25조 (보증)</b>  ① 1. ~ 7. (생 략)  8.보증인 <u>공인전자서명</u>  ② ~ ⑤ (생 략)</p> <p><b>제26조 ~ 제32조 (생 략)</b></p> <p><b>제33조 (부도어음 반환 등)</b>  ① ~ ② (생 략)  ③ (신설)</p> <p><b>제34조 (상환청구)</b>  ① 1. ~ 5.(생 략)  6.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자의 <u>공인전자서명</u>  ② ~ ④(생 략)</p> <p><b>제35조 ~ 제38조 (생 략)</b></p>	<p><b>제23조 (전자어음 배서)</b>  ① 1. ~ 6. (좌 동)  7.배서인 <u>전자서명</u></p> <p><b>제24조 (좌 동)</b></p> <p><b>제25조 (보증)</b>  ① 1. ~ 7. (좌 동)  8.보증인 <u>전자서명</u>  ② ~ ⑤ (좌 동)</p> <p><b>제26조 ~ 제32조 (좌 동)</b></p> <p><b>제33조 (부도어음 반환 등)</b>  ① ~ ② (좌 동)  ③ <u>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 시 오류반환 등 착오가 있는 경우 은행은 이를 확인한 후 관리기관에 취소요청을 할 수 있으며, 관리기관은 이를 전자어음원장에 등록한다</u></p> <p><b>제34조 (상환청구)</b>  ① 1. ~ 5.(좌 동)  6.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자의 <u>전자서명</u>  ② ~ ④(좌 동)</p> <p><b>제35조 ~ 제38조 (좌 동)</b></p>	<p>- 전자서명법 개정 (2020.12.10시행)</p> <p>- 전자서명법 개정 (2020.12.10시행)</p> <p>- 오류반환취소절차신설</p> <p>- 전자서명법 개정 (2020.12.10시행)</p>
--	---	--

**제39조 (면책)**

- ① (생략)
- ② 은행은 이용자의 전자어음 발행, 수취, 배서 등에 필요한 **공인인증서**, 비밀번호 등 은행에 신고된 것과 같음을 확인하여 처리한 경우 은행의 과실이 아닌 위조, 변조 및 기타의 사고로 이용자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다만, 은행이 위조, 변조 및 기타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~ ④ (생략)

**제40조 ~ 제44조 (생략)**

<붙임> 전자어음 이용 신청서 (생략)

**제39조 (면책)**

- ① (좌동)
- ② 은행은 이용자의 전자어음 발행, 수취, 배서 등에 필요한 **인증서**, 비밀번호 등 은행에 신고된 것과 같음을 확인하여 처리한 경우 은행의 과실이 아닌 위조, 변조 및 기타의 사고로 이용자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다만, 은행이 위조, 변조 및 기타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
- ③ ~ ④ (좌동)

**제40조 ~ 제44조 (좌동)**

**<부칙1>**

**1.이 약관은 2020.10.26 .부터 개정시행한다.  
다만, 아래에 따라 개정되는 조항은 개정 전자서명  
법 시행일(12.10.)로 한다.**

**이 약관 제3조 제6호, 제6조 제1항, 제19조 제1항  
제11호, 제23조 제1항 제7호, 제25조 제1항 제8호,  
제34조 제1항 제6호 중 "공인전자서명"을 각각 "전  
자서명"으로 하고, 제39조 제2항 "공인인증서"를  
"인증서"로 한다.**

<붙임> 전자어음 이용 신청서(좌동)

- 전자서명법 개정  
(2020.12.10)

- 부칙신설

|

--	--	--